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
(1999. 12. 28)

제안경위

- ▶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 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제199호 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8. 12.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동 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함.
-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개별법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 제2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3.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부터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 ▶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 골자

-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 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
- ▶ 건축사는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협회에서 회비징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폐단이 커 이를 폐지함 (안 제22조 삭제).
- ▶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안 제23조 제1항 및 제7항).
- ▶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안 제31조 내지 제33조).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면허)”를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중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축사 면허”를 “건축사자격”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를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면허의 취소등)”을 “(자격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그 면허를 받은”을 “그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를”을 “자격”로 하고, 동항제3호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가”를 “자격이”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한다.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할 때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중 “등록의 취소등”을 “자격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등록)”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을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를 “건축사업무신고 절차”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8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를 “건설교통부령이”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 제목 “(등록거부의 사유)”를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등록하는 자”를 “개설한

자"로 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7조의 제목중 "등록사항"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를 "성명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사항"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 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을 한"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등록사항변경등을"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등을"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28조제2항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제1호중 "건축사면허"를 "건축사자격"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제29조의 제목 "(등록의 말소)"를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축사사무소등록부"를 "건축사업무신고부"로, "등록"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제2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

력상실처분을 한 때"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설립하여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신고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 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중 "면허를 받거나"를 "자격을 취득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신고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제8조(면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 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 3의2. (생략)</p> <p>4.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0조(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p> <p>2. (생략)</p> <p>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p> <p>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p> <p>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p>	<p>제2조(정의)—————</p> <p>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제8조(자격) ①—————</p> <p>—————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 및 자격수첩—————.</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결격사유) —————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p> <p>1. ~ 3의2. (현행과 같음)</p> <p>4. 건축사자격—————</p> <p>—————</p> <p>제10조(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p> <p>—————자격증 또는 자격수첩—————.</p> <p>제11조(자격의 취소 등)—————</p> <p>————— 그 자격을—————.</p> <p>1. ————— 자격을 취득한 —————</p> <p>2. (현행과 같음)</p> <p>3. —————</p> <p>—————</p> <p>자격증 또는 자격수첩—————</p> <p>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p> <p>5.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3회 받은 때</u></p> <p>6.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u>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p> <p><u>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u>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제23조(등록) ①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u>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p> <p>② 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⑤ <u>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u>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연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u></p>	<p>_____ <u>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u> _____</p> <p>처분_____</p> <p>6.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u>자격이</u> _____</p> <p>_____ <u>자격증 및 자격수첩</u> _____</p> <p><삭 제></p> <p>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u>자격취소 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제23조(건축사업무신고 등) ① _____ <u>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p> <p>② _____ <u>건축사업무신고를 한</u> _____.</p> <p>_____</p> <p>_____</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건축사업무신고 절차</u> _____</p> <p>_____</p> <p>_____</p> <p>⑥ <u>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u> _____</p> <p>_____</p> <p>_____</p> <p><삭 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p> <p>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원 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p> <p>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p> <p>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3. 4. (생략)</p> <p>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는 자</p> <p>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u>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u>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제2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p>	<p>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_____건설교통부령이 _____.</p> <p>3. (현행과 같음)</p> <p>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p> <p>⑨ 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p> <p>〈삭제〉</p> <p>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_____</p> <p>3. 4. (현행과 같음)</p> <p>5. _____개설한 자</p> <p>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_____성명·건축사사무소_____건축사업무신고 사항_____.</p> <p>제28조(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 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연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p> <p>2. ~ 7. (생략)</p> <p>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u>등록사항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u></p> <p>9. (생략)</p> <p>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11. <u>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의한 때</u></p> <p>〈신설〉</p> <p>② <u>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p>〈신설〉</p>	<p><u>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u></p> <p>1. _____<u>건축사업무신고 등을 한</u>_____</p> <p>2. ~ 7. (현행과 같음)</p> <p>8. _____<u>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등을</u>_____</p> <p>9. (현행과 같음)</p> <p>10.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u></p> <p>〈삭제〉</p> <p>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p> <p>② _____<u>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u>_____</p> <p>_____.</p> <p>③ <u>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p> <p>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p> <p>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의 취소</p> <p>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p> <p>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p> <p>2. 3. (생 략)</p> <p>제30조(보고·검사등) ①·② (생 략)</p> <p>③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p> <p>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p> <p>②·③ (생 략)</p> <p>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 (생 략)</p> <p>③ 건축사협회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p> <p>제33조(회원)</p> <p>① 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p> <p>② 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p> <p>③ 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p> <p>제34조(임원) ①~③ (생 략)</p> <p>④ 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8조의2(청문)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건축사자격_____</p> <p>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p> <p>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_____</p> <p>건축사업무신고부-----신고사항_____.</p> <p>1.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0조(보고·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1조(건축사협회) ①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설립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3조(회원) ①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p> <p>_____</p> <p>②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_____</p> <p>_____.</p> <p><삭 제></p> <p>④ _____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 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_____.</p> <p>제34조(임원)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p> <p>2. (생 략)</p> <p>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p> <p>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p> <p>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p> <p>6. · 7. (생 략)</p>	<p>제39조(벌칙)—————</p> <p>1. -----자격 취득하거나—————</p> <p>2. (현행과 같음)</p> <p>3. -----</p> <p>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p> <p>5. -----건축사업무신고를—————</p> <p>6. · 7. (현행과 같음)</p>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

- 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 ③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 ④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으로 본다.
- ⑥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